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17일, 최민희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4.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9.) 상정, 축조심사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5.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민희 의원)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복우)

○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과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업무를 이관받은 방미통위의 업무 추진동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가 타당함.

- 다만, 방미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진흥원으로 통폐합시키는 김현의원안과 달리 2개 기관을 유지하면서 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기조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유사 기관을 존치한 채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능과 역할의 중복 및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역할을 통합해 수행할 기관이 필요함.
- 이질적인 두 기관의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 통폐합을 통한 효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진흥원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나, 방송 규제와 진흥, 방송의 자율과 독립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